

2019학년도

##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9년 12월 13일(금) 14:00

2. 장 소 : 화도관 2층 대회의실

3. 대학평의위원회(11명)

■참석의원 : 송영출, 천성오, 김태석, 이정훈, 김재요,  
김진곤, 김태훈, 정효찬, 윤성혁, 고민석 (10명)

■불참의원 : 이재현 (1명)

4. 안 건

가. 규정 개정/제정(안)

- 1) 환경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2) 건설법무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- 3) 직제규정 개정(안)
- 4) 교원 인사 규정 개정(안)
- 5)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6)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7)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(안)
- 8)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9)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0)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(안)
- 11)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2)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- 13)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4)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(안)
- 15)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시행 세칙 개정(안)
- 16)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개정(안)
- 17)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개정(안)
- 18)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(안)
- 19)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(안)

5.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

위원장이 성원 확인 후(총원 11명 중 10명 참석) 개회를 선언하고 최근 학교법인

광운학원의 개방감사 선임을 위해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다.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법인에 우호적인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법인의 발전과 공정한 이사 및 감사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
## 【규정 개정/제정】

### 1) 환경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수혜금액 조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 2) 건설법무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 3) 직제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직제규정 조항 신설을 통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
- 위원이 직제규정에 PD교수를 신설하면 보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며, 보직 임명이 되면 '보수규정'의 직무수당에 근거하여 급여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, 이를 위해 추후 보수 규정도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다.
- 각 학과(부)에 인증PD교수를 두는 경우 인증PD교수는 인증분야 업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### 4) 교원 인사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승급기간 2년으로 개정하며 기준은 가산하여 적용하지 않음
  - 계열별 두 가지 구분으로 심사기준 적용
- 위원이 최근 교원의 책임시수를 상향하였고 승진승급이 강화되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논문점수와 연구점수가 이공계열 대비 다소 높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문계열의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조정

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
- 정년보장교수 승급표에서 논문점수와 연구점수는 이공계열 만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만60세 미만은 20% 가산하여 적용하고, 인문계열도 만60세 이상을 논문점수 180점, 연구점수 300점으로 조정하고 만60세 미만은 20% 가산하여 조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#### 5)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겸초빙교수 강의 담당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수정
- 겸초빙교수의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되,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#### 6)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교육전임교원을 학과 소속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
  - 학과 소속 교육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강의 담당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7)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학과(부) 소속 기준 포함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8)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임용절차를 공개채용으로 할 경우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한 교원 신규임용 내규 준수
  - 복무기준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#### 9)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복무기준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0)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8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 중 1회, 6개월 특별연구학기 허가
  - 재직기간, 잔여 재직기간, 소속학과, 전공, 교원 의사 및 수행시기 고려 선발
  - 학기당 전체 특별전임교원의 10% 이내로 하며 학과별 수혜자는 동일기간 중 1명 원칙
- 특별연구학기 대상자는 특별연구학기 신청서를 접수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형식으로 수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11)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'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' 신설
  -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영역 추가, 언어와 표현 이동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2)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전공 교과과정 중 실기과목에 대한 정의 추가
  - 실기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결합하여 진행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3)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경영학교육인증제 이수요건 완화
  - 교환학생 교과목 이수에 대한 학점인정 상향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4)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
  - 원격평생교육원 관련 내용 삭제
- 제15조(자료수집 및 예산 확보)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생 수 , 도서관 이용현황 및 도서관 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조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15)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시행 세칙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도서연체료 상향 조정, 연체일수에 따른 대출정지 삭제
  - 원격평생교육원 관련 내용 삭제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6)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주임교수 제청 관련 내용 수정
  - 등록금을 학습비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7)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출석 관련 내용 조정
  - 대학총장 학위수여 전공명칭 수정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18)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(안)**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진로지도, 경력개발, 현장실습 활성화 내용 추가
  - 인재개발원장 당연직 위원 추가

-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기로 하다.
- 의결내용 :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.

**19)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(안)**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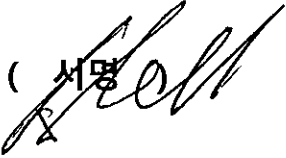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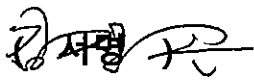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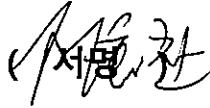

- 제안부서에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- 주요 내용
  - 간사를 기획처 직원으로 변경
- 의결내용 :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6. 폐회**

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19년 12월 13일

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.

의 장	송 영 출	
부 의 장	천 성 오	( 서명 ) 
평 의 원	김 태 석	( 서명 ) 
평 의 원	이 정 훈	( 서명 ) 
평 의 원	김 재 요	( 서명 ) 
평 의 원	김 진 곤	( 서명 ) 
평 의 원	김 태 훈	( 서명 ) 
평 의 원	정 호 찬	( 서명 ) 
평 의 원	윤 성 혁	( 서명 ) 
평 의 원	이 재 현	( 서명 ) 불참
평 의 원	고 민 석	( 서명 ) 